

		<h1>보 도 자 료</h1>		
「제조업 르네상스」				
2019년 7월 1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17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	
배포일시	2019. 7. 16.(화)	담당부서	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	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3-870-5450)	담당자	배종수 연구관(043-870-5574)	

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에서도 국가통합인증마크(KC) 확인하세요.
- 국가기술표준원, 단추형 건전지도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 -

- 현재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되었던 안전기준이 단추형(일명 버튼형) 건전지까지 확대된다.
 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『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*』 이행을 위해, 현재 안전관리에 포함되지 않던 단추형 건전지를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내 건전지 대상에 포함시키고, 이의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.
 - * 수은함유전지의 단계적 금지를 포함(2020년 시행), 우리나라를 포함한 128개국 서명 완료

-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,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**위해한 중금속 함량**(수은, 카드뮴, 납) 등을 관리하게 되며,
 -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/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, 제품에 KC 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.

-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,
 -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며, 제품 사용 권장 기한,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
 - 제조·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·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, 시험·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.

-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「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 기준」 개정안을 7월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,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건전지 안전기준 개정(안) 주요 내용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배종수 연구관(☎ 043-870-55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건전지 안전기준 개정(안) 주요 내용

□ 적용범위 변경

구분	현행 기준		개정 기준
안전확인대상 건전지 (부속서 5)	원통형 모양의 망간, 알칼리·망간 1차 건전지	▶	원통형·단추형 모양의 망간, 알칼리·망간 1차 건전지

< 원통형·단추형 모양의 건전지 제품 >



원통형 건전지

단추형 건전지

□ 안전요건 기준

구분	안전요건 기준	
수은(Hg) 함량	1 mg/kg 이하	
카드뮴(Cd) 함량	10 mg/kg 이하	
납(Pb) 함량	4,000 mg/kg 이하	
개로 전압*	망간 건전지	1.5V $\frac{+0.22}{0}$
	알칼리·망간 전지	1.5V $\frac{+0.15}{-0.05}$
내누액**	변형 및 누액이 없어야 한다.	

* 전지에 부하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 단자 사이의 전압

** 전해액이 외부로의 누출에 견딜 수 있는 성능